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1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 방안
-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 방안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2020. 12. 14]

1. 개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2. 그 동안의 노력

□ 코로나 19의 본격화(2월) 이후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

◦ 또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감독당국의 입장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주요 대응내용 >

□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허용 및 행정제재 면제**(‘20.3월)

* 해외 종속회사 등의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금감원 심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기한 연장 및 행정제재를 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 허용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월)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K-IFRS 제 1116 호(리스) 회계기준 개정**(‘20.7월)

* 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면제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리스부채의 재계산 없이 할인·면제 금액을 리스부채에서 단순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허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9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개별 :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연결 : 2조원 이상('22년) → 5천억원~2조원('23년) → 5천억원 미만('24년)

□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추진('20.11월)

* '20년부터 소규모 비외감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에 편입되도록 연결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획득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 추진

□ 감사인 선임·지정 등 관련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20.4월, 8월, 11월)

* 유한회사 등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설명회 개최('20.4월),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20.8월), K-IFRS 제·개정 내용을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설명회 개최('20.11월)

3. 코로나19관련 향후 감독방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예정

1) (회계감사기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12월)

[참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내용

-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 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
-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
-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

2)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 제시

- 외부감사법 개정('18.11.1.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존재
- ⇨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 예정('21.1분기)
-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 존재
-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
- ⇨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 (12월)

3) (외부감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
- ⇨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

4) (회계현안 설명회 등)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 회계법인 등과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필요

▷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

* 회계현안설명회(12.23일,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 지방순회설명회('21.1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4.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한공회, 회계기준원 등)과 협력하여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실무가이드 등은 '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 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2020. 12. 22]

1. 배경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일(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 외감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수는 감소 추세이나

◦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감사인 미선임·선임절차 위반에 따른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 사)

구분	'18년	'19년	'20.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1,473	32,431	31,827
지정회사수(미선임·절차위반)	111	92	56

2. 감사인 선임관련 '회사 유형별' 유의사항

□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시 준수하여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등), 선임기한 등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주권상장회사는 등록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등

◦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 활용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는 허용되는 반면, 서면·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음

[회사유형별 주요 유의사항]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비상장 대형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3. 향후계획

□ 상장협, 코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21.1월 중)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사인 선임 과정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

<참고> 회사 유형별 주요 절차 요약

구분	감사인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 (D)]	계약 기간	감사인 선정권한
주권상장회사	등록회계법인	D + 45일 (사업연도 개시전)	3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비상장 대형사금융사	회계법인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D + 4개월	1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유한회사		D + 45일 (초도: D + 4개월)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 상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제도 도입 취지

□ 정부는 12.15(화)에 개최된 제61회 국무회의에서 12.2(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 의 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p> <p>*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p> <p>○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②)의 경우 1 주택자 포함) 세대주</p> <p>*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p>	<p>□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p> <p>○(좌 등)</p> <p>- 무주택(②)의 경우 1 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p> <p>*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p>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 의 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p> <p>○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p> <p>○ (가산세) 지급금액 X 0.5%</p> <p>*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p>	<p>□ 가산세율 50% 인하</p> <p>○ (좌 등)</p> <p>○ (가산세) 지급금액 X 0.25%</p> <p>* (좌 등)</p>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
 정 및 경정하는 분
 부터 적용

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21.10.1. →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4.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적용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좌 동) </div>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 33)

정 부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p> <p>○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개인 유사법인)</p> <p>○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p> <p>- 배당 간주금액</p> <p style="padding-left: 20px;">=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p> <p style="padding-left: 40px;">× 지분비율</p> <p>○ (시행시기)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p>	<p>< 삭 제 ></p>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 8⑤·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신 설 ></p>	<p><input type="checkbox"/> 전자고지 신청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p> <p>*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p> <p>○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p> <p>○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중부법 §10의 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기본공제 : 9억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주요 내용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주요 내용

□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합니다.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합니다.
-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합니다.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 부가-0974, 2020.11.30)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비파괴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외국본점의 비파괴검사장비(이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조사업무,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및 수리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에 수반되는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 잠재적인 시장개발을 위한 회의참석, 잠재고객과의 상담, 경쟁사 제품 및 판매활동 모니터링 등
-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 외국본점과 국내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shipping 관련 문서 및 판매금액 수령 현황에 대한 관리
-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 최종사용자에게 장비에 대한 교육제공, 한국 및 아시아 고객에게 교정 및 수리 서비스 제공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의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무처리 지원업무, 제품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사무처리 지원,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등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업무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질의)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제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한·영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반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반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